



광화문 1번가 정책 제안: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정책

(사)오픈넷

전화: 02)581-1643 Fax: 02)581-1642

I.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

1.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철회

- 2016. 6. 29.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
 - ※ 19대 국회에 제출된 후 폐기된 안과 동일함
- 현행 임시조치 제도에 게시자의 복원권을 보장하여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자는 취지이나, 취지와 달리 방통위안은:
 - (1) 공익적·합법적인 게시글도 권리 주장만 하면 반드시 차단
 - ※ 현재 사업자들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 고위공직자 임시조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방통위안은 이러한 자율규제 노력을 불법화함
 - (2) 현재보다 퇴보된 기약 없는 복원 절차: 게시자의 이의제기시 1) 직권조정절차에 회부하고, 직권조정결정 확정까지 최소 26일에서 최장 55일 이상 소요되며, 직권조정 결과에 따라 2) 소송까지 해야 게시글이 복원됨
 - 즉, 복원 요청시 방통위안은 직권조정에서 해제결정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영원히 삭제됨
 - 현행은 사업자가 게시물이 공익적 또는 합법적이라고 판단되면 행정기관의 개입이나 소송 없이도 신속히 복원해줄 수 있는데 방통위안은 이 가능성을 없앴
 -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유지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며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구가 명예훼손 등 판단권 행사하는 행정검열권 부여
 - (4) 방통위안은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없으면 반드시 삭제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율이 5%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억압적임. 현행 제도는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삭제 의무 없음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오픈넷은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통위안을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요청함

2. 임시조치 제도 투명성 향상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일명 ‘임시조치’ 제도로 인하여 온라인에서 차단, 삭제되고 있는 게시물은 연간 약 45만 건임. 임시조치 제도는 본래 온라인 상에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개인의 인격권 침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 기업, 병원 등 법인들이나 공적 인물들이 경제력이나 지지세력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불만글이나 비판적 게시글을 무차별적으로 신고하여 차단하는 데에 남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음
- 임시조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하는 조치이지만, 어디까지나 법조문으로 이루어진 ‘제도’에 근거한 행위인 만큼, 방송통신위원회가 본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
 - 임시조치는 인터넷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통계 등 관련 정보는 기업에서 생산, 관리한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
 -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처가 기초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
 - 사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정부가 통계를 요구하고 이를 집계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일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연 2회 임시조치 각 건별 대장 관리 현황과 이를 정리한 임시조치에 대한 통계¹⁾자료를 보고받고,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이를 취합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임시조치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요청함

1) - 신고건수, 피해자 유형(기업, 개인사업자, 의료법인, 종교인, 연예인, 정치인 등), 신고인 유형(대리단체, 온라인삭제대행업체, 피해자 본인 등), 정보 유형(블로그, 커뮤니티 게시글, 기사 댓글 등), 이의제기 건수, 복원건수 등이 포함되어야 함

II.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강제법 폐지

1. 전기통신사업법의 내용

- 2015. 4. 16.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은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강제 하고 있음

※ 차단수단은 청소년유해정보차단 SW를 말하는데, 시행령은 정부 배포 “스마트보안관” 등 앱의 형태로 되어 있는 수단을 전제(이하 “차단 앱”).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0.15.]

- 동 법 시행령 제37조의8는 이통사가 계약 체결 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 후 차단수단을 설치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제37조의8(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 체결 시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본조신설 2015.4.14.]

2. 폐지의 필요성

가.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시행령에서 이통사의 차단수단 ‘설치여부 확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심각함
 - 시행령에 의하면 이통사는 차단 앱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결국 이통사는 차단 앱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상시 감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됨
 - 대부분의 차단 앱은 자녀용과 부모용으로 나뉘어 있으며 부모용을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내역 등을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부모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접근할 가능성이 있음
- 차단 앱 개발사가 차단 앱 삭제 여부를 파악해서 문자 등으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음. 이 과정에서 개발사는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집적 및 유통될 위험이 있음

나. 부모의 교육권 침해

- 이 법은 이통사에게 차단수단 설치의무를 부과할 뿐, 법정대리인에게 차단수단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
 -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차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모의 교육권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부모들이 차단수단 설치에 동의할 것이라 일방적으로 전제하고 있음

다. 안전한 차단수단의 부재

- 현재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차단수단, 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중 보안감사를 거쳐 안전함이 확인된 차단 앱이 전무한 상태이며, 특히 방통위가 개발 및 홍보예산을 지원하고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서 개발해 2012년부터 보급해오고 있었던 “스마트보안관”은 보안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짐

III. 휴대폰 실명제 단계적 폐지

1. 위헌적 휴대폰 실명제의 존재

-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휴대폰 타인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제32조의4에서 가입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휴대폰 실명제 실시 국가임
- 통신수단 타인제공을 처벌하도록 한 과거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있었으나(헌재 2002. 5. 30. 선고 2001헌바5), 이후 개정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매우 제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을 뿐 여전히 대부분의 대포폰(차명폰) 제공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2. 익명 통신의 자유 침해

- 헌법재판소는 이미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헌재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 252(병합))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으며, 익명 통신의 자유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헌법 제18조에 의해 보장되므로, 타인 명의로 통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익명 통신의 자유 침해임

3.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증대

- 이동사는 가입 단계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과도한 집적으로 해킹 등을 통한 유출 위험성이 높아짐
 - 헌법재판소도 실명제 하에서 '개인정보의 집적 및 유출 위험성'이 점증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2010헌마47)
- 수사기관이 휴대폰 명의자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제출받게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남용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임

4. 범죄 예방 효과 미미

- 휴대폰 실명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음
 - 멕시코에서는 SIM 카드 구매 시 의무적으로 본인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정책, 즉 SIM카드 등록제를 도입했다가 3년 만에 폐지했으며,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체코공화국, 루마니아 등의 국가는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고려했다가 취소했음. 2012년 EU 집행위원회(EC)는 SIM카드 등록제가 범죄수사 등에 특별한 편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바 있음

5. 휴대폰 실명제 단계적 폐지 제안

- 휴대폰 실명제는 이용자들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있어 폐지가 필요
- 특히 선불폰의 경우 실명제를 유지할 실익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통신비 인하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선불폰 실명제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함

<끝>